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4카기3443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

대표당사자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박휘영, 문철주

피 고 1.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대표이사 서명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2. 현재현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8길 27(성북동)
송달장소 :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서울구치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송태섭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0150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신 청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0150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동양(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동양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Yuanta Financial Holdings)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고, 피고 현재현은 동양그룹의 회장이다.

2) 이 법원 2014가합30150 증권관련 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의 제소자들(이하 '이 사건 제소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유안타증권을 통하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및 티와이석세스 제일차, 티와이석세스 제이차, 티와이석세스 제삼차, 티와이석세스 제육차, 티와이석세스 제칠차, 티와이석세스 제팔차, 티와이석세스 제구차(이하 위 티와이석세스 제일차 내지 티와이석세스 제구차를 통칭하여 '티와이석세스'라 한다)가 각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이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통칭하여 '회사채 등'이라 하고, 위 각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채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현재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진석, 피고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이승국, 동양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였던 이상화, 동양레저의 대표이사였던 금기룡 등(이하 통칭하여 '피고 현재현 등'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7. 피고 현재현 등에 대하여 '동양그룹은 만성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하

고 피고 회사를 통한 회사채 등 차환 발행과 계열사 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한 연명 단계에 있다가 2013. 2.에 이르러는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회사채 등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만기에 정상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현재현 등은 공모하여, 피고 회사를 통해 판매되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의 회사채 등이 발행회사의 적정한 공시와 신용평가 및 법규상 고객 보호의무를 가진 금융투자업자인 피고 회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상품으로서 이들 회사채 등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회사채 등을 각 판매하여 각 발행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회사채 등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 현재현 등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329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5. 22. '피고 현재현, 정진석은 2013. 8. 20. 이후 동양그룹이 더 이상 만기에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면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피고 현재현은 2013. 8. 20.경부터 2013. 9.경까지 동양그룹의 최대주주이자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재무와 인사를 장악한 상태에서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을 피고 회사가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최종적으로 지시·승인하고, 정진석은 같은 기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피고 회사를 통해서 판매함에 있어 발행 물량 및 조건 등을 최종 결재하여, 2013. 8. 20.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회사채 등을 각 판매하고, 각 발행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회사채 등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 현재현, 정진석, 이승국에 대하여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

조정은 2013. 8. 중순경 실패하였고, 피고 현재현, 정진석의 경우 늦어도 2013. 8. 20.경에는 1차 구조조정 실패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현재현, 정진석, 이승국이 2013. 8. 20.경 이전부터 1차 구조조정 실패를 인식하여 각 회사채 등 발행·판매 시에 그 상환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8. 20. 이전까지 판매한 회사채 등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 현재현 등이 대법원 2015도819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금융감독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등

금융감독원은 2013. 9. 30.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를 대상으로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회사의 영업점 직원 715명은 2010. 2. 11.부터 2013. 9. 17.까지 기간 중 동양그룹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 557억 5,000만 원을 일반투자자 1,719명(투자건 2,242건)에게 판매하면서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한 정보를 투자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적합성 원칙 위반), 피고 회사의 영업점 직원 1,231명은 2009. 10. 15.부터 2013. 9. 27.까지 기간 중 동양그룹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 5,468억 8,000만 원을 일반투자자 11,168명(투자건 21,169건)에게 판매하면서 유선으로 투자권유 시 금리 및 만기만을 설명하거나, 상품설명이 없는 상품설명서의 빈 양식에 서명만 미리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 회사의 영업점 직원 764명은 같은 기간 중 동양그룹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 1,000억 원을 일반투자자 2,821명(투자건 3,932건)에게 판매하면서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설명의무 및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피고 회사의 영업

점 직원 925명은 2012. 3. 9.부터 2013. 9. 27.까지 기간 중 동양그룹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 1,375억 7,000만 원을 일반투자자 3,774명(투자건 5,204건)에게 판매하면서 "원금보장이 된다"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동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권유를 한 사실(부당권유), 피고 회사의 신탁팀은 2010. 3. 9.부터 2013. 9. 17.까지 기간 중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 6조 5,871억 원을 연계 거래를 통해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매수금지 회피 목적 연계거래), 피고 회사의 영업점 직원 1,277명 및 신탁팀은 2011. 11. 9.부터 2012. 7. 31.까지 및 2013. 3. 4.부터 2013. 9. 17.까지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않고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계열회사 회사채 등 8,718억 원(22,831건)을 소유하고 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자금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식으로 위탁자로부터 지정받아 운용한 사실(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 발행증권 10% 초과소유 등)' 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 28.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및 사채권 모집의 신규주선 업무의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현재현 등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는 등 임직원 22명을 문책 조치하였다.

라. 이 사건 본안소송 제기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1) 이 사건 제소자들은 2014. 6. 10. 이 법원에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채 등을 매수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1조 6,99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채 등을 발행·매매하면서, ① 동양인터내셔널의 매출액을 부풀려 회계를 분식하고 감사인을 기망하여 감사거절 의견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

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② 계열사들 간의 불법적인 자금지원 등을 통해 그룹을 연명하는 상황에서도 동양그룹의 실정을 보도하는 각종 기사를 차단하여 시장 수요를 관리하고 그룹 지원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회사채 등을 정상 결재할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으며, ③ 부도위험성이 높아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회사채 등을 리스크 검토 등 아무런 투자자보호조치 없이 적극적으로 판촉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채 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정당한 방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총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본안소송의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를 신청하였다.

2) 이 법원은 2014. 12. 2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람들 및 박성윤, 석선주를 이 사건 본안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박성윤, 석선주는 2015. 8. 10.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였다.

2.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 적합 여부 - 적용 범위

가. 관련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소송이 집단소송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청구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소송법 및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단소송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자본시장법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요건

1)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이 사건 제소자들은 이 사건 회사채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회계부정, 투자자 기망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

여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는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의 책임주체

(1) 주장 요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78조는 문언 및 규정 체계상 자연인의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한 것일 뿐 법인은 그 책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의 책임주체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이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항 제1호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2호는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제3호는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위 각 호의 규정은 자연인의 행위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므로 법인의 책임에는 자연인의 행위가 전제될 수밖에 없고, 법인도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사법상의 책임을 규율하는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의 책임주체를 자연인에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법인도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의 책임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의 개연성 여부

(1) 주장 요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청구원인이 되는 주장 자체는 형식상으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막연한 의혹이나 추측 또는 해당 증권의 만기에 상환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 사실에만 기초하였을 뿐, 그 주장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그 주장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면 소송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은 소송허가요건이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11. 4.자 2015마 402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사기적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제소자들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심리할 대상일 뿐, 소송허가 단계에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에 관한 심리를 소송허가 단계에서 그 때까지 현출된 자료들만으로 미리 하는 것은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소송절차를 분리하여 전자에서는 특정 소송이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도록 한 집단소송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소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그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요건

1) 이 사건 제소자들의 주장 요지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취지는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를 주식의 거래에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규정의 문언은 입법기술상의 오류라고 할 것이고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주권비상장법인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가 발행한 회사채 등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한 주권상장법인인 동양 계열회사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고, 이들 회사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인 계열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지 주권비상장법인 명의로 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유통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증권은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해당하여 위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2) 판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서의 "발행"의 의미는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된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설령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증권발행행위에 공모하는 등으로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해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가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 중 위 각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매수한 구성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본안소송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가 발행한 회사채 등을 매수한 구성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집단소송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판력을 미치는 집단소송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집단소송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바, 나아가 같은 법 제11조의 요건 적합 여부를 살펴본다).

3.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 적합 여부 - 대표당사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총원'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하고,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 3호). 대표당사자는 직접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소송담당자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표당사자들 중 강종구, 김희철, 노정희, 박상천, 양정화, 박주동은 주권비상장법인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가 발행한 회사채 등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들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집단소송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대표당사자들 중 위 6인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중 한명인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집단소송법 제12조의 요건 적합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소자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 신청은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불허가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5.

재 판 장 판 사 김정운

판 사 이고은

판 사 송인석

별지

목 록

1. 강종구
서울 동작구 상도로36길 2(상도동)
2. 김흥준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0, 5동 302호(개포동, 경남아파트)
3. 김희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55, 비동 1305호(서초동, 강남태영데시앙루브)
4. 노정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로 28, 110동 202호(삼계리, 대동이미지1차아파트)
5. 박상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33, 103동 702호(양근리, 코아루리버팰리스)
6. 박현용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8번길 9(이동)
7. 배영환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72, 1602호(대방동, 대방2차덕산타운)
8. 배재희
서울 관악구 난곡로 55, 212동 1702호(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2단지아파트)
9. 성효석
인천 중구 신도시북로 44, 614동 702호(운서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0. 안주원
부산 남구 양지골로 172번길 5(감만동)
11. 양정화
서울 관악구 은천로33길 5, 106동 903호(봉천동 관악동부센트레빌아파트)
12. 유진아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27-7, A동 202호(송파동, 대림하이츠타운)
13. 이순자
인천 부평구 마곡로27번길 11, 비동 비01호(산곡동, 성업빌라)

14. 이해운
여주시 가남읍 금당2길 16-2(금당리)
15. 정성용
제천시 도화로2길 22-6(모산동)
16. 조선일
서울 양천구 월정로 21, 101동 1508호(신월동, 해태아파트)
17. 황희선
서울 도봉구 해등로25길 36, 52동 709호(쌍문동, 한양아파트)
18. 이새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65동 1302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9. 주식회사 금성설비기술공영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36, 2층(도곡동)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30, 105동 302호(도곡동, 쌍용예가아파트)
대표이사 이영일
20. 박주동
인천 부평구 부일로 69, 107동 1204호(부개동, 푸르지오아파트). 끝.